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8-17

수 원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7039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김○○
피 고	○○시장
변 론 종 결	2023. 4. 27.
판 결 선 고	2023. 5.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2021. 6. 28. 원고에게 한 취득세 731,415,300원(가산세 포함) 및 지방교육세 61,867,3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8-17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동차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3. 6. 27. ○○○○○○공단으로부터 ○○시 B 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 내에 위치한 ○○시 C 공장용지 33,816.2㎡(이하 '이 사건 공장용지'라 한다)를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7. 3. 29. ○○○○○○공단으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았다.[1)]

다. 원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4항 제2호 및 부칙(2014. 12. 31.) 제25조에 따라 이 사건 공장용지는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 감면신청을 하였고, 2017. 5. 2. 피고로부터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945,376,480원을 면제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장용지 중 일부에 연면적 5,752.84㎡의 산업용 건축물(이하 '이 사건 공장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9. 4. 10. 그 사용승인을 받았다.

마. 피고는 2021. 4. 19.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공장용지 중 이 사건 공장건물의 부지 등 제외한 나머지 20,564㎡(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에 따라 원고가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하겠다는 내용의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

1) B 산업단지는 해안간석지를 매립조성한 단지로, 매립·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사준공인가일을 취득일로 보고,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허가를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승낙일·허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8항 참조). 원고는 2017. 3. 29. ○○○○○○공단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잔금을 지급하고, 사용승낙을 받았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8-17

바. 피고는 2021. 6. 28.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취득세 등 합계 793,282,6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세목		과세표준 / 대상금액(원)	산출세액(원)	근거 법령
취득세		14,092,780,615	563,711,220	지방세법 제10조, 제17조
지방교육세		281,885,610	56,371,120	지방세법 제151조
가산세	일반무신고	563,711,220	112,742,240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1항
	납부불성실(취득세)	563,711,220	54,961,840	지방세기본법 제55조
	납부불성실(지방교육세)	56,371,120	5,496,180	지방세기본법 제55조
취득세 소계			731,415,300	
지방교육세 소계			61,867,300	
합계			**793,282,600**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2. 9. 조심D 사건에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 5, 8, 1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쟁점토지를 다음과 같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

가) 원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업, 산업용 기계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이 사건 쟁점토지에 원자재, 제품, 제품 생산에 필요한 설비 또는 건축자재 등을 보관하였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8-17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장용지에 공장건물을 건축할 계획이 있었고 실제로 이 사건 공장건물을 건축하였으나 재정악화로 이 사건 쟁점토지에는 당초 계획하였던 나머지 공장건물을 건축하지 못하여 당초 계획을 실천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다) 원고는 상수도관, 가스관을 설치하여 이 사건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고 있고,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평탄화 작업을 하여 언제든지 그 위에 공장건물을 건립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장용지 전체를 1필지의 공장용지로 취득하였고, 이 사건 쟁점토지도 공장용지로 등록되어 있다.

마) 원고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호 및 구 공장입지기준고시(2016. 3. 8.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1호 [별표 1]에서 정한 기준공장면적률 15%를 충족하였다.

2)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2017. 6. 26. 원고의 공장건물에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공장을 폐쇄하였고, 그에 따라 경영이 악화되어 매출이 급감하였으며, 2020년경 코로나19 확산으로 급감한 원고의 매출 회복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는 모두 원고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에 가까운 사정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3) 원고는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으므로, 피고는 지방세기본법 제26조 제1항 및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호, 제4호, 제8호에 따라 직권으로 납세신고 기한을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8-17

연장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신고기한은 당초 신고기한인 2020. 5. 29.에서 2021. 5. 29.로 1년 연장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피고가 위 기한 내인 2021. 4. 19.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이에 원고로서는 그 신고가 불필요하게 되어 별도로 이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직접 사용' 여부에 관한 판단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제1호 가.목, 제2호 가.목에 따르면,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 12. 31.까지 취득세가 면제되는데,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2014. 12. 31.) 제25조는 제7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2015. 12. 31.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제78조 제4항 제1호의 대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제78조 제4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개정 법률에도 불구하고 2017. 12. 31.까지 종전의 법률이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위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이 사건 쟁점토지의 이용상황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5, 7, 8호증, 을 제2 내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8-17

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당초 이 사건 산업단지에 입주신청을 하면서 작성한 2013. 6. 5.자 사업계획서에는 용지면적 총 33,000㎡ 중 15,000㎡에는 제조시설을, 5,000㎡에는 부대시설을 건축할 예정인 것으로 기재된 사실, 원고가 2018. 5. 23. 입주계약변경신청을 하면서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용지면적 총 33,000㎡ 중 3,754.55㎡에는 제조시설을, 1,955.22㎡에는 부대시설을 건축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던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공장용지에 실제로 건축한 이 사건 공장건물은 그 연면적은 5,752.84㎡이고, 이 사건 쟁점토지는 이 사건 공장용지 중 이 사건 공장건물의 부지 등을 제외한 나머지 20,564㎡인 사실, ○○시 소속 담당직원이 2021. 4. 16., 2022. 10. 28., 2022. 12. 22. 및 2023. 4. 7. 총 네 차례 이 사건 공장용지를 방문하였는데, 이 사건 쟁점토지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으며, 그 위에 어떠한 공장건물나 시설물 등이 건축되어 있지 않았고, 원자재 등도 적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음을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당초 이 사건 공장용지의 약 70%인 20,000㎡를 공장건물과 그 부대시설 등의 부지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이 사건 공장용지를 취득한 이후 실제로는 이 사건 공장건물만을 건축하였고, 그 부지 등을 제외한 나머지 공장용지인 이 사건 쟁점토지는 당초의 계획과 달리 원고의 사업 또는 업무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갑 제21호증, 갑 제23호증의 1 내지 7, 갑 제24, 25호증의 각 기재, 갑 제22호증의 영상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쟁점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8-17

3) 원고는 상수도관, 가스관을 설치하여 이 사건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4호증의 1,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갑 제14호증의 2, 갑 제20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장건물로부터 이 사건 쟁점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공장용지의 경계를 따라 그 지하에 상수도관과 가스관을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설령 향후 이 사건 쟁점토지에 공장건물을 건축할 경우 위 상수도관과 가스관을 이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토지의 경계를 따라 지하에 상수도관과 가스관이 설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쟁점토지가 원고의 사업 또는 업무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갑 제14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와 같이 설치된 상수도관이 연결된 시상수도 본관이 이 사건 공장건물의 반대편으로 이 사건 쟁점토지 너머에 있는 위치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장건물에 연결되는 상수도관을 시상수도 본관에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장용지의 경계를 따라 설치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4) 원고는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평탄화 작업을 하여 언제든지 그 위에 공장건물을 건립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7, 24, 2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평탄화 작업을 완료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가 위 평탄화 작업을 완료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를 원고의 사업 또는 업무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5) 원고는 이 사건 쟁점토지의 지목이 공장용지로 되어 있음을 이 사건 쟁점토지의 '직접 사용'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이 사건 쟁점토지의 실제 이용상황이 이 사건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8-17

쟁점토지의 지목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없다.

6) 원고는 산업집적법 제8조 제2호 및 구 공장입지기준고시 제3조 제1항 제1호 [별표 1]에서 정한 기준공장면적률 15%를 충족하였음을 근거로 이 사건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산업집적법 제8조 제2호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조업종별 공장부지면적에 대한 공장건축물등의 면적의 비율(기준공장면적률)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 공장입지기준고시 제3조 제1항 제1호 [별표 1]은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의 경우 기준공장면적률이 15%라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공장입지의 기준을 규정한 것일 뿐, 해당 공장부지면적이 모두 해당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토지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지 여부는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위 기준공장면적률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라. 정당한 사유 유무에 관한 판단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토지를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위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토지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9978 판결의 취지 참조).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8-17

2) 살피건대, 갑 제6호증, 갑 제10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시 E에 있던 원고의 공장건물 철근콘크리트조 샌드위치패널 2동 지상 2층 3,316.65㎡에서 2017. 6. 26. 화재가 발생하였고, 동산 도금 1점, 그을음 면적 1,000㎡의 피해를 입은 사실, 원고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기재된 수입금액이 2015 사업연도는 약 1,692억 원, 2016 사업연도는 약 1,667억 원, 2017 사업연도는 약 1,279억 원, 2018 사업연도는 약 1,052억 원, 2019 사업연도는 약 993억 원, 2020 사업연도는 약 748억 원으로 2015 사업연도 이후 매년 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화재로 인한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수입금액이 매년 감소된 것이 위 화재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를 원고의 사업 또는 업무를 위한 용도로 사용함에 있어서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코로나19로 인하여 경기가 악화되었다는 등의 사정으로 원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에 당초 계획과 달리 공장건물을 건축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당시의 영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규투자로 인한 수익성을 감안하여 공장건물 건축에 나아가지 아니한 것으로서 원고의 내부적 사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지방세기본법 제26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사변, 화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 제출·통지나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8-17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납세자의 신청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2) 위 규정에 의하면, 화재 등의 사유로 신고 등의 기한이 연장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그 기한을 연장하거나 납세자의 기한 연장 신청에 따라 해당 기한을 연장하였어야 하고, 화재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해당 기한이 연장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화재 등의 사유를 이유로 취득세 등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하였다거나, 피고가 직권으로 또는 원고의 신청에 따라 그 신고기한을 연장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신고기한이 2021. 5. 29.로 1년 연장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

판사 이○○

판사 이○○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8-17

관 계 법 령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⑧ 관계 법령에 따라 매립·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사준공인가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허가를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승낙일·허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감면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8-17

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나.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법률 제12955호, 2014. 12. 31>

제25조(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경감세율 특례)

제7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2015년 12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제78조 제4항 제1호의 대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 [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대수선 하려는 자가 제78조 제4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 법률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법률을 적용한다.

■ 지방세기본법

제26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사변(事變), 화재(火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 제출·통지나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 또는 납세자의 신청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기한의 연장사유 등)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납세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8-17

4. 납세자가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로 한정한다)

8.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공장입지의 기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공장입지의 기준(이하 “입지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제조업종별 공장부지면적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건축물등(이하 “공장건축물등”이라 한다)의 면적의 비율(이하 “기준공장면적률”이라 한다)과 그 적용 대상

■ 구 공장입지기준고시(2016. 3. 8.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기준공장면적률과 그 적용방법)

① 법 제8조제2호의 제조업종별 공장부지면적에 대한 공장건축면적의 비율(이하 "기준공장면적률"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1. 기준공장면적률 : (공장건축면적 / 공장부지면적 × 100) [별표 1]

[별표 1] 업종변경의 대상이 되는 업종분류 및 기준공장면적률

업종 분류	업 종 명	표준 분류	업 종 명	기준공장 면적률
2913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 포함	29131	액체 펌프 제조업	20
		29132	기체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29133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	15